

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혜지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588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2월 05일

발 의 자: 김혜지 의원(1명)

찬 성 자: 곽향기, 김경훈, 김규남,
김길영, 김원중, 김형재,
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
문성호, 민병주, 박상혁,
송경택, 옥재은, 유정인,
이봉준, 이상욱, 이희원,
최진혁, 허 · 훈 의원(20
명)

1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안은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구간에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경우 중복운행구간에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소는 각각 4개소 이내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마을버스 노선선정 시 일반노선버스 운행구간을 피하여 이면도로를 포함하여 노선을 선정하여 교통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 지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노선을 선정하는 것에 제한이 발생함.
- 마을버스 노선별로 운행거리에 따라 정류소의 개수가 차이가 있으나 모든 마을버스 노선의 중복운행구간에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소는 각각 4개소 이내로 설치하도록하는 것은 형평성 위배됨.

2. 주요내용

- 가. 일반 노선버스와 마을버스 정류소 중복 개수를 마을버스 총 정류소 개수에 비례하여 설치하도록로 조정하고 함 (안 제10조제4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,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,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4항 중 “각각 4개소 이내로” 을 “마을버스 총 정류소의 개수에 비례하여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기준 등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마을버스가 시행규칙 제8조제4항 각 호의 마을 등을 기점 및 종점으로 하여 이들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(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) 또는 일반노선버스 정류소간을 운행하도록 하여야 하며,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구간에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경우 중복운행구간에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소는 <u>각각 4개소 이내로</u> 설치하여야 한다.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>⑤ ~ ⑦ (생략)</p>	<p>제10조(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기준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----- <u>마을버스 총</u></p> <p><u>정류소의 개수에 비례하여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⑤ ~ ⑦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조(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기준 등)제4항 중 “각각 4개소 이내로” 을 “마을버스 총 정류소의 개수에 비례하여” 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 마을버스 정류장 설치는 각 자치구의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어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희선
추계세제팀장	이정수
추 계 분 석 관	김지혜

☎ 02-2180-7953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